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시행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1호, 2016.7.1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2016.7.1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28.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
2016.7.1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5.10.28., 2016.7.1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2.8.20.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2015.10.28.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
2016.7.13. 개정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8.20.>
2.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8.20.>
3.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개정 2012.8.20.>
4.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개정 2012.8.20.>
5.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8.20.>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12.8.20.>
7. "유입풍도"란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개정 2012.8.20.>
8. "배출풍도"란 예상 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개정 2012.8.20.>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라 함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내의 공간을 말한다. 2. "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3. "제연경계의 폭"이라 함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수직거리"라 함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6.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7. "유입풍도"라 함은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8. "배출풍도"라 함은 예상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2012.8.20. 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2.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3.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연경계의 폭"이라 함은"을 ""제연경계의 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직거리"라 함은"을 ""수직거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예상제연구역"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7. "유입풍도"란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8. "배출풍도"란 예상 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이라 함은"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화문"이란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입풍도"라 함은"을 ""유입풍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배출풍도"라 함은"을 ""배출풍도"란"으로 한다.
--	--	--

제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정	제114조 (배연구획) 배연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층을 2개이상의 배연구획으로 구분할 것 2. 하나의 배연구역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 300제곱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단순한 형상으로하여 소화활동 및 피난상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구획할 것 4. 하나의 배연구역에 1개이상의 공기유입구를 설치할 것 제115조 (배연경계벽) 배연경계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알루미늄·유리등 가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 또는 파손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할 것 2. 급기구에 사용되는 개구부에는 그 천정(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에 1미터이상 당해층	

	의 높이의 2분의 1미만의 크기의 수직벽(원격조작이 가능한 가동식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배연경계벽 또는 수직벽이 가동식인 경우에는 배연기의 기동장치와 연동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배연경계벽 또는 수직벽 부근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거나 원격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할 것 4. 벽의 길이가 20미터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가진 피난구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유입구를 피난구로 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6조 (배연기) 배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배연구역에 대하여 배연성능이 1분당 120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배연기를 2이상의 배연구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연구역중 최대의 것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2제곱미터이상의 배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공기유입구에서 배연구역으로의 평균 유입풍속 1초당 2미터이상인 것으로 할 것. 3. 하나의 배연기를 2이상의 배연구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배연구역마다 배연풍도·배연용 절환댐퍼를 설치할 것. 4. 배연기·배연용 절환댐퍼의 전동기등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제117조 (배연풍도등) 배연풍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연풍도는 두께 1.6밀리미터이상의 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배연기와 배연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연풍도가 벽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벽등과의 틈이 없도록 할 것. 4. 배연풍도가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 있어서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방화댐퍼를 부착할 것. 제118조 (급기구) ① 배연구역의 급기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급기를 자연유입하는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직접 외기로 통하는 통로·경사로등으로 할 것. 2. 제1호외의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급기구역내의 기압을 배연구역의 기압보다 높게하여 급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하나의 배연구역에는 1개이상의 급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9조 (배연설비의 기동장치) ① 배연설비의 기동장치는 수동기동장치로 하거나 화재로 인하여	
--	---	--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 작동되는 자동기동장치로 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배연기의 기동장치·방화댐퍼·가동식의 수직벽·가동식의 배연경계벽등은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984.8.16.	제114조 (배연구역) ① 배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배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배연구역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는 상호 배연구획할 것 3. 통로상의 배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4. 하나의 배연구역은 직경 4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직경을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5. 하나의 배연구역은 2개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배연구획하여야 한다. ②배연구역의 구획은 보·배연경계벽(이하 이 관에서 "배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질은 내화재 또는 불연재(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할 것 2. 배연경계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배연경계의 폭"이라 한다)가 0.6미터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수직거리"라 한다)가 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3. 배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1984.8.16.]	전문 개정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14조 (제연설비 <개정 1993.11.11.>)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	제114조의 제목 "(배연설비)"를 "(제연설비)"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중 "배연설비"를 "제연설비"로, "배연구역"을 "제연구역"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중 "배연구역"을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40미터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직경을 6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②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이 관에서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재질은 내화재 또는 불연재(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천정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배연경계의 폭"이라 한다)가 0.6미터이상이고,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이하 이 관에서 "수직거리"라 한다)가 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각각 "제연구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배연구역"을 "제연구역"으로, "배연구획"을 "제연구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본문중 "배연구역"을 "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벽"을 "제연경계벽"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배연경계"를 각각 "제연경계"로 하며, 동항제3호중 "배연경계벽"을 "제연경계벽"으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4조(제연설비) ①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조 변경
2012.8.20. 개정	제4조(제연설비) ①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호"로 한다.

제5조(제연방식)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배출(이하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③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화재발생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4.8.16.	제115조 (배연방식) ①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배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예상배연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화재시 연기배출(이하 이 관에서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배연경계에 의한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③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배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 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비용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최대의 배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영 제114조 내지 영 120조)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15조 (제연방식 <개정 1993.11.11.>) ①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제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화재시 연기배출(이하 이 관에서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③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1.11.>	제115조의 제목 "(배연방식)"을 "(제연방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배연구역"을 "제연구역"으로,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배연경계"를 각각 "제연경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개정	제5조(제연방식)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	조 변경

	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2008.12.15. 개정	제5조(제연방식)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제2호 본문 중 “배출만으로”를 “배출로”로 한다.
2012.8.20. 개정	제5조(제연방식)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1.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5조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 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12.8.20.>

통로길이	수직거리	배출량	비고
40m 이하	2m 이하	25,000m ³ /hr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m초과 2.5m이하	30,000m ³ /hr	
	2.5m초과 3m이하	35,000m ³ /hr	
	3m초과	45,000m ³ /hr	
40m 초과 60m 이하	2m이하	30,000m ³ /hr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m초과 2.5m이하	35,000m ³ /hr	
	2.5m초과 3m이하	40,000m ³ /hr	
	3m초과	50,000m ³ /hr	

② 바닥면적 400m²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40,000m³/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수 직 거 리	배출량
2m 이하	40,000m ³ /hr 이상
2m 초과 2.5m 이하	45,000m ³ /hr 이상
2.5m 초과 3m 이하	50,000m ³ /hr 이상
3m 초과	60,000m ³ /hr 이상

2.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45,000m³/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수 직 거 리	배출량
2m 이하	45,000m ³ /hr 이상
2m 초과 2.5m 이하	50,000m ³ /hr 이상
2.5m 초과 3m 이하	55,000m ³ /hr 이상
3m 초과	65,000m ³ /hr 이상

③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출량은 45,000m³/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2호의 표에 따른다.

④ 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되,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2.8.20.>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 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

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이며,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 중심선의 길이를 4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수직거리가 구획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4.8.16.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배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배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1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예상배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1시간당 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배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배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인 예상배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이상으로 할 것 <table><tr><th>통로길이</th><th>수 직 거 리</th><th>배 출 량</th><th>비 고</th></tr><tr><td>40미터이하</td><td>2미터이하</td><td>1시간당 2만5천세제곱미터</td><td>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td></tr><tr><td></td><td>2미터초과 2.5미터이하</td><td>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td><td></td></tr><tr><td></td><td>2.5미터초과 3미터이하</td><td>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td><td></td></tr><tr><td></td><td>3미터초과</td><td>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td><td></td></tr><tr><td>40미터초과 60미터이하</td><td>2미터이하</td><td>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td><td>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td></tr><tr><td></td><td>2미터초과 2.5미터이하</td><td>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td><td></td></tr><tr><td></td><td>2.5미터초과 3미터이하</td><td>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td><td></td></tr><tr><td></td><td>3미터초과</td><td>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td><td></td></tr></table> ②바닥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거실인 예상배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상배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배연구역이 배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table><tr><th>수 직 거 리</th><th>배 출 량</th></tr><tr><td>2미터이하</td><td>1시간당 4만천세제곱미터이상</td></tr><tr><td>2미터초과 2.5미터이하</td><td>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td></tr><tr><td>2.5미터초과 3미터이하</td><td>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td></tr><tr><td>3미터초과</td><td>1시간당 6만세제곱미터이상</td></tr></table> 2. 예상배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배연구역이 배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표에 의한다.	통로길이	수 직 거 리	배 출 량	비 고	40미터이하	2미터이하	1시간당 2만5천세제곱미터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3미터초과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		40미터초과 60미터이하	2미터이하	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			3미터초과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		수 직 거 리	배 출 량	2미터이하	1시간당 4만천세제곱미터이상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3미터초과	1시간당 6만세제곱미터이상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비용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최대의 배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영 제114조 내지 영 120조)
	통로길이	수 직 거 리	배 출 량	비 고																																												
40미터이하	2미터이하	1시간당 2만5천세제곱미터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3미터초과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																																														
40미터초과 60미터이하	2미터이하	1시간당 3만세제곱미터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3만5천세제곱미터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																																														
	3미터초과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																																														
수 직 거 리	배 출 량																																															
2미터이하	1시간당 4만천세제곱미터이상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3미터초과	1시간당 6만세제곱미터이상																																															

	<table><tr><th>수 직 거 리</th><th>배 출 량</th></tr><tr><td>2미터이하</td><td>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td></tr><tr><td>2미터초과 2.5미터이하</td><td>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td></tr><tr><td>2.5미터초과 3미터이하</td><td>1시간당 5만5천세제곱미터이상</td></tr><tr><td>3미터초과</td><td>1시간당 6만5천세제곱미터이상</td></tr></table> ③예상배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연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이내인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배연구역이 배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1호의 표에 의한다. 2.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배연구역이 배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2호의 표에 의한다. ④배출은 각 예상배연구역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배출량이상을 배출하되, 2개이상의 예상배연구역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이상의 예상배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공동예상배연구역"이라 한다)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배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1. 공동예상배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배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배연구역의 구획중 출입구만을 배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배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이상으로 할 것 2. 공동예상배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배연구역이 각각 배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배연구역의 구획중 일부가 배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부분만을 배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배연구역의 배출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배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이며, 직경 40미터 원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배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수직거리가 구획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는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한다.	수 직 거 리	배 출 량	2미터이하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5만5천세제곱미터이상	3미터초과	1시간당 6만5천세제곱미터이상	
수 직 거 리	배 출 량											
2미터이하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											
2미터초과 2.5미터이하	1시간당 5만세제곱미터이상											
2.5미터초과 3미터이하	1시간당 5만5천세제곱미터이상											
3미터초과	1시간당 6만5천세제곱미터이상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16조제1항본문중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본문중 "예상배연구역"을 각각 "예상제연구역"으로 하며,										

1.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1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1시간당 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이상으로 할 것 표 (생략) ②바닥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생략) 2.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미터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표에 의한다. 표 (생략) ③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의 배연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이내인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1호의 표에 의한다. 2.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출량은 1시간당 4만5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제2항제2호의 표에 의한다. ④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배출량이상을 배출하되, 2개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하 이 관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한다)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1.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이상으	동조제2항본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며, 동항제2호본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한다. 제116조제3항본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고, 동조제4항본문중 "예상배연구역"을 각각 "예상제연구역"으로, "공동예상배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공동예상배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예상배연구역"을 각각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구역"을 각각 "제연구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동예상배연구역"을 각각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구역"을 "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각각 "제연경계"로 한다.
---	---

	로 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이며, 직경 40미터 원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생략)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으로 할 것 표 (생략) ②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④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되,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1. ~ 2. (생략) ⑤ (생략)	조 변경
2012.8.20.	제6조(배출량 및 배출방식) ①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제5조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으로 할 것 표 (생략) ②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내지"를 "제1항부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④배출은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되,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예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할 수 없다. 1. ~ 2. (생략) ⑤ (생략)	호”로 한다.
--	---	---------

제7조(배출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개정 2012.8.20.>
 -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 나.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②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4.8.16.	제117조 (배출구) ① 예상배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예상배연구역(통로인 예상배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배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나. 예상배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배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 예상배연구역에서 배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배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인 예상배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통로외의 예상배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비용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최대의 배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영 제114조 내지 영 120조)

	다. 가. 예상배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상배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배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배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배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예상배연구역에서 배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배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예상배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17조 (배출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1.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예상제연구역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정·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내가 되도록 하여	제117조제1항본문·제1호본문 및 가목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각각 "제연경계"로 하며, 동항제2호본문 및 가목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예상배연구역"을 각각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각각 "제연경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한다.

	야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7조(배출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생략) -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략) - 예상제연구역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당해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2012.8.20. 개정	제7조(배출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생략)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략)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예상제연구역”을 “해당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②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래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③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개정 2012.8.20.>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 될 것

2. 해당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해당 제연구역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개정 2012.8.20.>

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⑥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⑦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4.8.16.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예상배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배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예상배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의 거실인 예상배연구역(배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미터이상으로 할 것.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비용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최대의 배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영 제114조 내지 영 120조)

	다만, 공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의 거실인 예상배연구역(배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미터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배연구역(통로인 예상배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다만, 배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배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할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배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③공동예상배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예상 배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배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공동예상배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배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배연구역안의 1개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④인접한 배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배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배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배연경계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배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2. 당해 구역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 배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담파가 자동폐쇄될 것 ⑤예상배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도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예상배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배연구역의 1분당 배출량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35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예상배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1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집회장·음식점·유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의한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미터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할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정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③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예상 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④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2. 당해구역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제연구	제118조제1항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구역"을 "제연구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며, 동항제3호본문중 ""예상배연구역"을 각각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고, 동호 나목중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공동예상배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동예상배연구역"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예상배연구역"을 각각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고, 동조제4항본문중 "배연구역"을 각각 "제연구역"으로,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배연경계"를 "제연경계로 하며, 동항제2호중 "배연구획"을 "제연구획"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내지 제7항중 "예상배연구역"을 각각 "예상제연구역"으로 한다.
---------------------------	--	---

	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담파가 자동폐쇄될 것 ⑤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도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의 1분당 배출량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35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1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목에 따를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③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④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당해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될 것 2. 당해구역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당해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될 것 ⑤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³/min에 대하여 35cm²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조 변경

	하여야 한다.	
2012.8.20. 개정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②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다만,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생략) ③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예상 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할 것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 될 것 2. 해당구역 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해당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 될 것 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³/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것.”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내지 제4항의 규정”을 “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 배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② 배출풍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8.20.>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mm이하	450mm초과 750mm이하	750mm 초과 1,500mm이하	1,500mm초과 2,250mm이하	2,250mm초과
강판두께	0.5mm	0.6mm	0.8mm	1.0mm	1.2mm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4.8.16. 개정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 배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1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배출량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석면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②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 <table><tr><td>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td><td>450밀리미터 이하</td><td>450밀리미터 초과 750밀리미터 이하</td><td>750밀리미터 초과 1,500밀리미터 이하</td><td>1,500밀리미터 초과 2,250밀리미터 이하</td><td>2,250밀리미터 초과</td></tr><tr><td>강판두께</td><td>0.5밀리미터 이상</td><td>0.6밀리미터 이상</td><td>0.8밀리미터 이상</td><td>1.0밀리미터 이상</td><td>1.2밀리미터 이상</td></tr></table>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초속 15미터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초속 20미터이하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밀리미터 이하	450밀리미터 초과 750밀리미터 이하	750밀리미터 초과 1,500밀리미터 이하	1,500밀리미터 초과 2,250밀리미터 이하	2,250밀리미터 초과	강판두께	0.5밀리미터 이상	0.6밀리미터 이상	0.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이상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비용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최대의 배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영 제114조 내지 영 120조)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450밀리미터 이하	450밀리미터 초과 750밀리미터 이하	750밀리미터 초과 1,500밀리미터 이하	1,500밀리미터 초과 2,250밀리미터 이하	2,250밀리미터 초과									
강판두께	0.5밀리미터 이상	0.6밀리미터 이상	0.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이상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개정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배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 3. (생략) ②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2012.8.20.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배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1.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 3. (생략) ②배출풍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표 (생략) 2. (생략)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한다.
--	---	---

제10조(유입풍도등) ①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두께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②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4.8.16. 본조신설	제119조의2 (유입풍도등) ① 유입풍도안의 풍속은 초속 2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비용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최대의 배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영 제114조 내지 영 120조)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10조(유입풍도등) ①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2008.12.15. 개정	제10조(유입풍도등) ①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두께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입풍도안의 풍속은 20㎧ 이하로 하고 풍도의 강판두께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2016.7.13.>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②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정	제120조 (배연설비의 비상전원) 배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984.8.16. 개정	제120조 (배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 배연설비의 비상전원설치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동식의 벽·배연경계벽·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배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비용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최대의 배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영 제114조 내지 영 120조)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개정 1993.11.11.> ①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개정 1993.11.11.> ②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11.>	제120조의 제목중 "배연설비"를 "제연설비"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배연경계벽"을 "제연경계벽"으로, "예상배연구역"을 "예상제연구역"으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비상전원 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생략)	조 변경 전문 개정
2012.8.20. 개정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비상전원 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2016.7.13.	제11조(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①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생략)	
--	--	--

제12조(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삭제 <개정 2008.12.15.>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12조(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는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른 환기설비가 화재발생시 제연설비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유효하게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재시 발생한 연기의 역류를 방지하고 연기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할 것 3. 송풍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화재시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와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화재에 직접 노출되는 송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비 송풍기를 별도로 확보할 것 4. 제연용량의 산정시 화재강도는 20MW 이상으로 할 것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2008.12.15. 삭제	제12조(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삭제>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5., 2012.8.20.>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재정	제121조 (배연설비의 설치 제외)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것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장·경기장·집회장의 무대부로서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구부면적(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시 외기에 면하여 있거나 수시로 개폐 가능한 개구부를 말한다)의 합계가 그 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인 것 2. 카바레·유기장·댄스홀·시장·정거장·대합실·차고·	

	주차장으로서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구부면적의 합계가 그 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의 200분의 1 이상인 것	
1984.8.16. 개정	제121조 (배연설비의 설치제외) ①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면적의 합계가 당해배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부분의 수평거리가 30미터이내이고, 공기유입이 제11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이상)에는 배연설비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공기조화설비가 배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배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기조화설비로 배연설비를 갈음할 수 있다. ③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변소·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50제곱미터미만의 물품창고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공기조화설비가 배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배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기조화설비로 배연설비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으로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덜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 121조제2항).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개정 1993.11.11.>) 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면적의 합계가 당해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부분의 수평거리가 30미터이내이고, 공기유입이 제11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이상)에는 제연설비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1.11.> ②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공기조화설비가 제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제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기조화설비로 제연설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1.11.> ③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변소·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50제곱미터미만의 물품창고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3.11.11.>	제121조의 제목중 "배연설비"를 "제연설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배연설비"를 각각 "제연설비"로, "배연구역"을 "제연구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배연설비"를 각각 "제연설비"로 "배연기능"을 "제연기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배연설비"를 "제연설비"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개정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화장실·목욕실 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2008.12.15.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대상물 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2012.8.20. 개정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7.4.12.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8.20. 개정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중 “용도 변경되”를 “용도변경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0.28.>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9.8.24.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8.20. 개정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제15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2015.10.28. 개정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

부칙 <제2016-101호, 2016.7.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자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전 연혁법령인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1982.9.15.)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